

복 명 서 (재난위험시설 해제)

문서번호 주거정비과-14746

보고일 2014.11.25.

보고자 지방시설주사보
이정우

주무관	재개발2담당	주거정비과장	도산명규장		결
이정우	정병익	정택근	11/27 김장수		재
주무관			김각모		

2014.10.31.자로 준공인가된 돈암5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위험시설(D급)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.

I 관련 규정

■ 추진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안전조치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(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·관리 지침)

■ 시설현황

- 공 사 명 : 돈암제5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
- 위 치 : 성북구 돈암동 13-7번지 일대
- 건축규모 : 지하4층, 지상23층/철근콘크리트조,
연면적 : 66,866.9㎡, 6개동 490세대

○ 현 공 정 : 준공완료(2014.10.31.)

○ 시 공 사 : 금호건설

○ 현장사진(2014. 11. 현재)



전경(정릉1동→현장)



전경(길음역→현장)

■ 향후조치계획

○ 상기 준공완료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(D)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.

- 재난위험시설 해제 및 소유자 서면통보
- 재난관리부서 통보(일제조사 결과 통보시). 끝.